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 : 타임폴리오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2.01.18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
- 법시행령 제260조 개정사항 반영(2020. 3.10 개정)

4. 효력발생일 : 2022.02.08

<투자설명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(간이투자설명서)			
투자비용	기업공시 서식 개정 사항 반영	<신설>	투자비용 [비용] 반영
	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(주 4) 동종 집합투자 기구 연평균 수익률	상세 설명 추가	(주 4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 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 다. <추가>	(주 4)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,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 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 다. 또한 동일 유형으로 분류한 집합투자 기구 중 운용 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,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여 평 균운용성과가 계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형태	기업공시서식 개 정사항 반영(고난 도금융상품)	바.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: 해당 없음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
가. 운용전문인력			

<p>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</p> <p>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	<p>법시행령 제 260 조 개정사항 반영</p>	<p>①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<추가>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<추가>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<추가></p>	<p>①상장주식 :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: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(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외의 경우 전날의 가격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: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(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	
<p>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	<p>결산 재무정보 및 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	<p>-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			
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회사개요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	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 및 이해관계인 현황</p>	<p>-</p>	<p>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: 삼성증권 (자본시장법 제 6 조제 10 항에 따른 전담 중개업자)</p> <p>※ 삼성증권은 당사가 운영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·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(자본시장법 제 6 조제 10 항에 따른 전담중개업자)입니다.</p> <p>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</p>